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에 따른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2014. 1.

안 전 행 정 부
개인정보보호과

#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민번호 수집·이용 현황 ····· 2

Ⅲ. 개선 방향 ····· 4

Ⅳ.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조치사항 ····· 5

1. 기본 원칙 ····· 5

2. 판단 기준 ····· 5

3. 주민번호 수집 금지 체크리스트 ····· 7

4. 개선 절차 ····· 8

5. 기관별 조치사항 ····· 9

Ⅴ. 지원 체계 ····· 10

【붙임】

1. 주민번호 처리 근거 법령 정비 입법례

2. 입법 모델 및 참고사항

3. 주민번호 수집 금지 필요성 검토 및 조치사항 예시

4.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시범 사례

5. 주민번호 수집·이용 허용 법령 사례

6.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 관련 Q&A

# Ⅰ 개 요

## 1 배경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 이에 따라, '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 8월부터 旣 시행 중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 추진 경과>**

⇨ '12.4월 :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안행부, 방통위, 금융위 참여)
⇨ '12.8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방통위)
⇨ '14.8월 : 오프라인 및 공공기관 등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 예정(안행부)

## 2 개정「개인정보보호법」주요 내용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까지) 파기**

○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2)

-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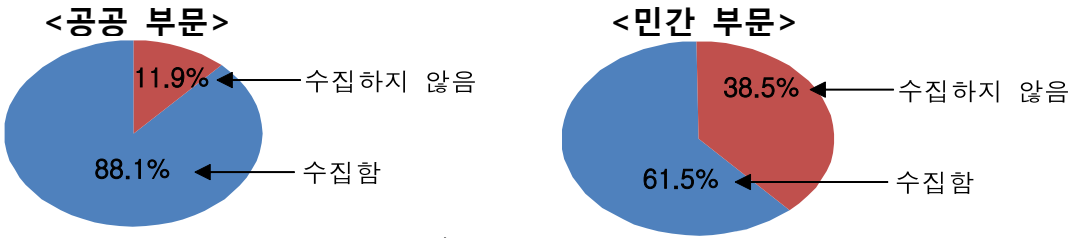
○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 (제65조제3항)

-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CEO)**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 Ⅱ 주민번호 수집·이용 현황

○ **주민번호**는 행정, 금융, 의료,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식별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공공 88.1%, 민간 61.5%가 주민번호 수집)

- **(공공)** 법령상 의무 준수(54.6%), 본인 확인(50.3%) 등을 위해 수집
- **(민간)** 본인 확인(54.8%), 계약 체결 및 이행(37.8%) 등을 위해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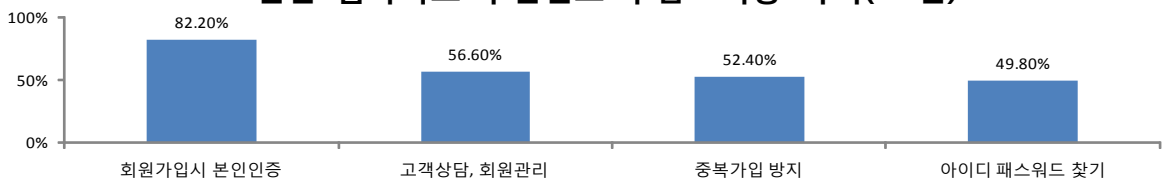



※ 출처 : 2013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주민번호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과다 수집·이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음

-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국내 웹사이트(약 32만개) 중 **92.5%(약 29.6만개)가 불필요한 수집**('13.4월, 국회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
- **공공기관 50.3%, 민간사업자 54.8%**가 **단순 본인확인 목적**으로 주민번호 수집(2013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안행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민간 웹사이트 주민번호 수집·이용 목적('12년) >**




※ 출처 : 2012년 정보보호 실태조사(KISA, '12.12월)

**< 시 사 점 >**

◎ 주민번호는 **사회 전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웹사이트 회원관리, 단순 본인확인 등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경우가 많음**

⇒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주민번호 요구 관행의 시급한 개선 필요

* 유출 사례 : S사 3,500만건('11.7월), N사 1,320만건('11.11월), K사 870만건('12.7월) 등

**【참고 1】 해외 주요국의 고유식별정보 제도**

□ 우리나라의 주민번호와 같이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국민식별정보, 사회보험번호, 사회보장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사용 중

○ 사용 목적 및 범위를 특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활용 제한

| 구분 | 세부내용 |
|---|---|
| 미국 | ▶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사용함<br>- Privacy Act of 1974 에 SSN 요구시 제출의 필수성 여부, 요구의 법률근거, 제공된 SSN의 사용목적 및 제시거부 등의 처리방법 사전 고지<br>▶ 개별 법률에서 번호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의 소재에 관한 규정까지 포함 |
| 영국 | ▶ 국민건강보험서비스(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 등록 시 **개인식별번호** 부여 |
| 캐나다 | ▶ **사회보험번호**(SIN : Social Insurance Number)를 사용함<br>▶ 벌금부과, 소득세 징수, 실업급여 등 15개 행정업무에만 사용<br>▶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험번호 수집 등 행위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상회하는 사회적 이득이 있는 경우만 수집·사용 가능<br>▶ 사회보험번호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에게 그 목적, 강제성 여부, 제시 거부시의 결과 등을 사전 고지하여야 함 |
| 스웨덴 |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Act 1998 : 204)」 '민감한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data)'에 **국민식별번호**를 포함<br>▶ (제22조) 처리 목적, 신원보안의 중요성, 기타 중요한 사유 외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br>▶ (제50조) 정부 또는 정부가 지명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감독 당국의 결정은 규정에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

※ 참조 :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국외 개인정보보호법 분석"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2012.10.

# Ⅲ 개선 방향

## 1 목표 : 사회 전 분야 주민번호 미수집 환경 구축




## 2 개선 방향

▸ **법 시행일('14.8.7.) 이후 사회 전반의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
⇒ 대체수단 도입 등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 금지 추진

▸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업무 전반 파악, 법제도 · 서식 등 개선 추진**
⇒ 관련 법제도, 내부 규정, 업무절차, 관련 서식 정비 등 병행

○ 개정「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4.8.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 사회 전 분야의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

-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수단 도입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16.8.6일까지 파기**

※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업무절차, 내부규정, 서식 개선 등 병행

○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처를 통해 법령 근거 마련** 및 **필요 최소한 범위 내 주민번호 수집 · 이용**

- 민간사업자/협회, 소관부처 등은 소관업무와 관련한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 근거* 마련

* **[붙임1] 주민번호 처리 근거 법령 정비 입법례 참조**

# Ⅳ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조치사항

## 1 기본 원칙

1.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2.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 근거 마련
   ▸ (민간사업자/협회) 해당 업종 소관부처에 법령 근거 마련 지원 요청
   ▸ (소관부처) 타당성 검토 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 근거 마련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전환

## 2 판단 기준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 판단 기준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금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

**<기준 1> 주민번호 처리 법령 근거 유무**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 **[붙임1] 주민번호 처리 근거 법령 정비 입법례 참조**

(예시) 법령 조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허용하는 경우, 법정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있는 경우, 법령 조문 또는 서식상 주민번호가 포함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경우 등을 말함

-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아래 <기준 2> 검토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기준 2> 불가피성 유무(주민번호 대체 불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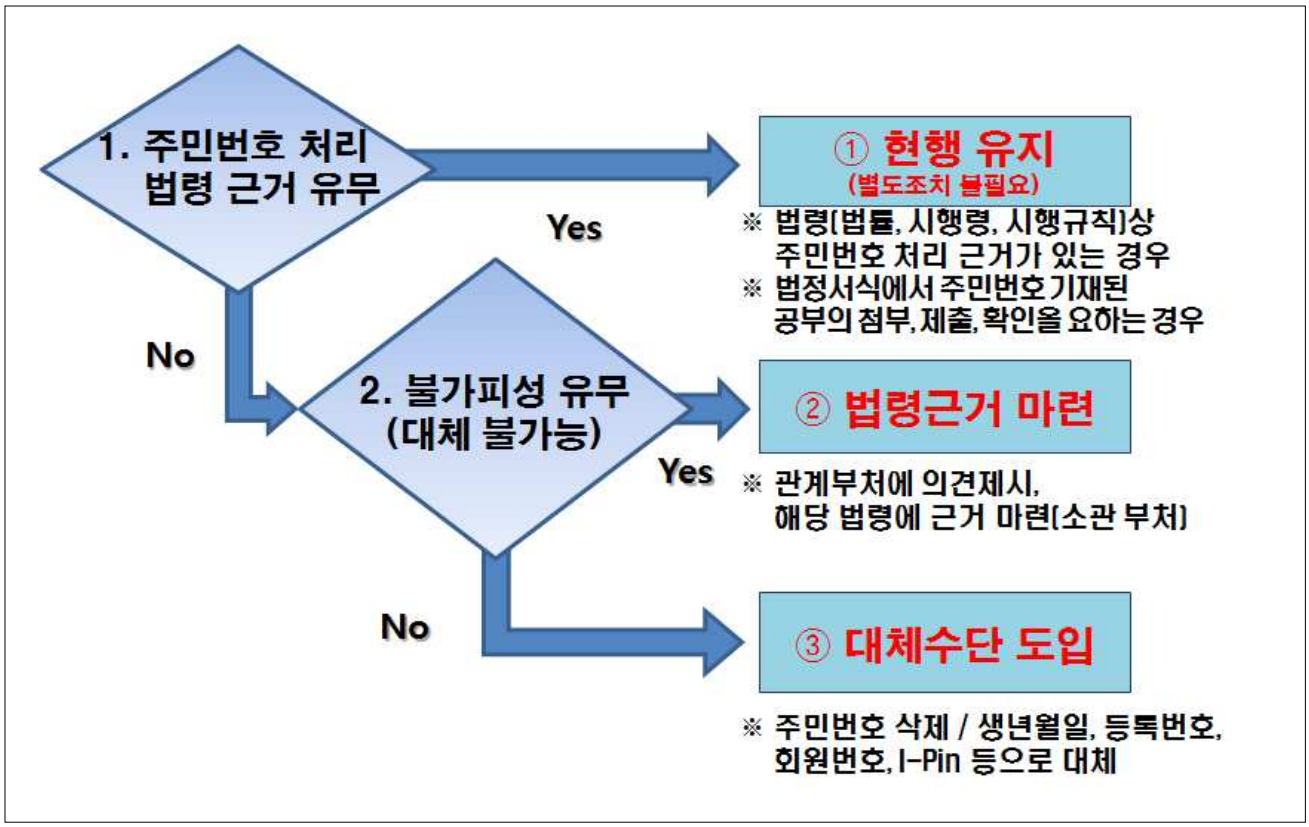
-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반드시 주민번호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소관부처를 통해 법령근거* 마련**

  * **[붙임2] 법령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모델 및 참고사항 참조**

-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전화번호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고, 기 보유 주민번호는 파기

(예시)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경우, 회원DB 관리를 위한 Key 값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은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이 낮으며 다른 수단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 해당

【참고 2】 주민번호 수집 금지 판단 기준




① (기준 1→ Yes) 법령상 구체적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 **현행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민번호 처리**(별도 조치 불필요)

*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실명거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작성 등은 법령상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② (기준 1→No, 기준 2→ Yes)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근본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업무 소관부처에 **법령 근거 마련을 요청**

③ (기준 1→No, 기준 2→ No)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주민번호를 반드시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경우

▸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거나 전화번호, 생년월일, *i*-PIN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관련 업무규정 및 절차, 서식 개선 등 병행), 기 보유 주민번호는 파기

※ 급박한 재해, 재난 상황 등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 처리 가능

## 3 주민번호 수집 금지 체크리스트

○ 주민번호 수집 금지 필요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 결과 사례는 [붙임 3] 참조

<table>
<tr><th colspan="3" rowspan="2">점검사항</th><th colspan="2">점검결과</th></tr>
<tr><th>예</th><th>아니오</th></tr>
<tr><td rowspan="2">점검<br>단계</td><td>1. 주민번호 수집<br>법령근거 유무</td><td><u>현재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업무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u><br>*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함<br>* 행정규칙(고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br>* ‘법령’의 별지 서식에 ‘주민번호 기재항목’이 있거나,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의 제출, 첨부 등을 규정한 경우에도 법령 근거가 있는 것으로 봄<br>* ‘처리’란 수집·이용, 기록, 저장 등 제반 행위를 의미</td><td></td><td></td></tr>
<tr><td>2. 불가피성 유무<br>(대체가능성)</td><td><u>해당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가?</u><br>* ‘불가피성’이란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 그 해당업무의 수행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br>* 전화번호, 생년월일, I-PIN 등 대체수단을 적용하거나 다른 개인정보 항목(예컨대 성명+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불가피성‘이 없는 것임</td><td></td><td></td></tr>
<tr><td colspan="2">조치사항</td><td colspan="3">
<table>
<tr><th>구분</th><th>법령근거</th><th>불가피성</th><th>조치사항</th></tr>
<tr><td>①</td><td>있음</td><td></td><td>별도 조치 불필요 (현행 유지)</td></tr>
<tr><td>②</td><td>없음</td><td>있음</td><td>법령 근거 마련</td></tr>
<tr><td>③</td><td>없음</td><td>없음</td><td>주민번호 삭제,<br>생년월일 등으로 전환,<br>I-PIN 등 대체수단 도입</td></tr>
</table>
</td></tr>
</table>

## ④ 개선 절차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선단계 및 일정>

| STEP 1 | | STEP 2 | | STEP 3 |
|---|---|---|---|---|
| 주민번호 처리 실태 자체조사, 수집 금지 필요성 검토, 필요시 법령근거 마련 요청 | ➪ | 주민번호 수집 금지 계획 수립 및 시행 | ➪ | 기 보유 주민번호 파기 |
| '14.3월말 이전까지 | | '14.8.7일 이전까지 | | '16.8.6일까지 |

○ **(Step 1) 자체적 실태조사·분석 및 수집 금지 필요성 검토**

- 민간사업자, 공공기관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주민번호 처리실태 자체 조사 및 수집 금지 필요성 검토
-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처에 법령 근거 마련을 요청(입법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14.3월까지 법령 정비 요청)

※ '12.1월~'13.1월 중 27개 부처 299개 법령에 주민번호 처리 근거 일괄 정비 완료

* (예시) 주민번호 미수집시 법령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 **(Step 2) 주민번호 수집 금지 계획 수립 및 시행**

- 당해 업무 특성 및 연계 서비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위한 대체수단 도입 등 구체적 계획 수립
-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업무절차, 내부규정, 서식 등 개선 병행*

* **(붙임 4)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시범 사례 참조**

○ **(Step 3) 기 보유 주민번호 파기**

-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경우 '14.8.7일 이전까지 미수집 전환을 완료한 후, 기 보유 주민번호는 '16.8.6일까지 모두 파기
- 단, 계약 또는 거래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주민번호는 당사자간 권리 의무 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 정비 추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파기

## 5 기관별 조치사항

### ○ 중앙행정기관

-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 행정서식, 민간서식 등을 통한 주민번호 처리 실태 조사·분석 (소관분야 관련 공공 및 민간 총괄)
-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 및 수집 금지 타당성 검토(지방자치단체, 민간협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법령근거 정비, 불필요한 경우 대체수단 도입 등 미수집 전환 추진(하위규정 및 서식 등 개선 병행)

###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 관련 법령, 조례, 자체 지침 및 규정, 관련 서식 등을 통한 주민번호 처리 실태 조사·분석 (소관업무 관련 공공 및 민간 총괄)
-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 및 수집 금지 타당성 검토(관련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민간협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의견제시, 불필요한 경우 대체수단 도입 등 미수집 전환 추진(업무절차 및 서식 등 개선 병행)

### ○ 민간사업자, 협회/단체

**【민간사업자】**

- 소관 사업과 관련한 주민번호 처리 실태,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고객서비스 및 영업상 영향도 등 조사·분석
-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협회/단체 등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법령근거 마련 요청, 불필요한 경우 미수집 전환 추진(내부 규정, 고객관리프로그램, 서비스 신청서식 등 개선 병행)

**【협회/단체】**

- 소관 업종에 종사하는 민간사업자 의견 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 제시,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 및 지원체계* 적극 안내

※ 본 가이드라인 10쪽, 'Ⅴ. 지원체계' 참조

## Ⅴ 지원체계

○ **법령 근거 마련 지원**

-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분야 이해 관계자(민간협회/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 근거 마련 지원

- **(안전행정부)** 각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례, 법령 반영 필요성 검토 사항 등 지원

○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전담창구 운영을 통한 법제도·기술지원 등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 운영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 연락처>**

◇ 대표 문의처 : 국번 없이 118번

◇ 관련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 문의

☞ 이메일 : jumin@kisa.or.kr

◇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지원 상담 및 컨설팅 문의

☞ 이메일 : privacy_support@kisa.or.kr

※ 기타 문의

- ▸ 공공아이핀 : 공공아이핀센터(02-818-3050)
- ▸ 민간아이핀 : NICE 아이핀(1588-2486), SIREN24(1577-1006)
- ▸ 관련 자료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자료실)

## 붙임 1 주민번호 처리 근거 법령 정비 입법례

○ '12.1 ~ '13.1월 중 27개 부처 소관 299개 대통령령 일괄정비 입법례

| 법령 명 | 조문 내용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6. 개정) |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br>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2012.1.6. 개정) |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 제5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그 상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병역법 시행령** (2012.1.6. 개정) |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제118조의3 및 제119조의3에 따른 군종·의무·수의 분야 현역 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무와 제119조에 따른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br>②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병역의무자의 제1국민역 편입, 징병검사(재징병검사를 포함한다),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및 전역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 |
|---|---|
| |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br>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또는 법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협조 또는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국적법 시행령**<br>(2012.1.6. 개정) |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무소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br>1. ~ 8. (생략)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br>(2013.1.16. 개정) |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청장(법 제71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공동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2013.1.16. 개정)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자료,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br>1. ~ 7. (생략) |

※ 정비 대상 법령이 다수인 경우에는 일괄개정 입법례*를 참조하여 부처별 일괄 정비 가능

* (예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일 공포) 등

## 붙임 2 입법 모델 및 참고사항

**【입법모델 1】: 주민번호 처리가 필요한 사무가 다수인 경우**

제00조[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장관 (제00조에 따라 ○○○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2] 다음 각 호의 사무[3]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0조제0호에 따른 ○○○사무
2. 법 제00조제00호에 따른 ○○○사무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입법모델 2】: 주민번호 처리가 필요한 사무가 1~2개인 경우**

제00조[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장관 (제00조에 따라 ○○○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2] 법 제00조에 따른 ○○○사무[3] 및 이 영 제00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참고사항】**

1) 규정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보칙의 장·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위치에 신설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다음, 벌칙 규정 전에 적절한 위치에 신설(단, 현행 조문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항;으로 신설 가능)

2) 법령상 행정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위탁된 경우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 괄호와 같이 규정

3) 주민번호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업무" 대신 "○○○사무"로 통일하여 사용. 다만, 해당 법령규정 전체의 맥락에서 보다 적합한 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를 사용함.

※ 업무 특성상 주민번호 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다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도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기재('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조문제목 > '고유식별정보' 검색 결과 참조)

※ 법령 상에서 단순히 '신원확인' 또는 '연령확인' 등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주민번호 처리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상기의 【입법모델】 등과 같이 구체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함

## 붙임 3 주민번호 수집 금지 필요성 검토 및 조치사항 예시

| <사례 1> 금융실명거래 제도 | | |
|---|---|---|
| 검토 | ① 법령근거 유무 | **있음**<br>⇒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br>※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실지명의 확인 |
| | ② 불가피성 유무 | **있음**<br>⇒ 주민번호 미처리시 금융실명거래 제도 유지 곤란 |
| **결론 및 조치사항** | | 별도 조치 불필요 (현행 주민번호 처리 유지) |

| <사례 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
|---|---|---|
| 검토 | ① 법령근거 유무 | 있음<br>⇒「소득세법」 제145조·제164조, 동법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등<br>※ 원천징수의무자 등 주민번호 기재 명시 |
| | ② 불가피성 유무 | 있음<br>⇒ 주민번호 미처리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신고업무 곤란 |
| **결론 및 조치사항** | | 별도 조치 불필요 (현행 주민번호 처리 유지) |

| <사례 3> 홈페이지 회원 가입·관리 | | |
|---|---|---|
| 검토 | ① 법령근거 유무 | 없음<br>⇒ 단순 회원관리를 위한 주민번호 처리는 법령근거 없음<br>※ 게시판 본인확인을 규정한 舊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로 효력 상실<br>※ 다만 전자상거래업자 등의 경우 거래기록 보존을 위해 주민번호 처리 가능(「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 | ② 불가피성 유무 | 없음<br>⇒ 생년월일+전화번호 조합, i-PIN 등으로 대체 가능 |
| **결론 및 조치사항** | | 주민번호 삭제 및 필요시 대체수단 도입 |

| <사례 4>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경감 (가스, 전기, 수도 등) | | |
|---|---|---|
| 검토 | ① 법령근거 유무 | 없음<br>⇒ 다만 개별 지침 또는 고시 등에서 주민번호 처리근거를 두는 경우가 존재<br>※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 지침),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등에서 장애인등 요금감면시 주민번호 요구 |
| | ② 불가피성 유무 | 있음<br>⇒ 요금감면 대상자의 정확한 신원확인·조회 및 부정 수급·혜택 방지 등을 위해 주민번호 처리 필요 |
| 결론 및 조치사항 | | 해당 법령 개정 필요<br>(관계 공기업, 사업자 등은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및 의견제시) |

| <사례 5> 직원 신규 채용시 신상기록·명부 기재 | | |
|---|---|---|
| 검토 | ① 법령근거 유무 | 있음<br>⇒「국민건강보험법」등 공적보험 처리,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위한 주민번호 처리근거 존재 |
| | ② 불가피성 유무 | 있음<br>⇒ 근로계약 체결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의 작성을 위해 주민번호 처리 필요 |
| 결론 및 조치사항 | | 별도 조치 불필요 (현행 주민번호 처리 유지)<br>※ 단, 채용전형 진행단계에서는 주민번호가 불필요하므로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한해 주민번호 수집·이용<br>(인사·노무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참조) |

| <사례 6> 온라인 실명확인 서비스 | | |
|---|---|---|
| 검토 | ① 법령근거 유무 | 없음<br>⇒ 개별 법령에 연령확인의무 또는 본인확인의무 규정이 있더라도 '주민번호' 이용 근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이름+주민번호' 방식의 실명확인 불가 |
| | ② 불가피성 유무 | 없음<br>⇒ i-PIN,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으로 대체 가능 |
| 결론 및 조치사항 | | 주민번호 삭제 및 필요시 대체수단 도입 |

| <사례 7>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 | |
|---|---|---|
| 검토 | ① 법령근거 유무 | 있음<br>⇒ 보험업법 시행령상 단체보험 가입 등을 위한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 존재 |
| | ② 불가피성 유무 | 있음<br>⇒ 단체보험 계약체결시 보험계약 당사자인 회사는 피보험자인 임직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전달 필요 |
| 결론 및 조치사항 | | 별도조치 불필요 (현행 유지)<br>※ 단 보험가입을 위해 새로 수집한 주민번호는 보험회사 전달 후 즉시 파기 필요 |

| <사례 8> 멤버십 회원 본인확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 | | |
|---|---|---|
| 검토 | ① 법령근거 유무 | 없음 |
| | ② 불가피성 유무 | 없음<br>⇒ 성명+휴대전화번호 등의 조합으로 대체 가능 |
| 결론 및 조치사항 | | 주민번호 삭제 및 다른 정보 조합으로 대체 |

| <사례 9> 렌터카 이용 계약시 주민번호 처리 | | |
|---|---|---|
| 검토 | ① 법령근거 유무 | 없음 |
| | ② 불가피성 유무 | 없음<br>⇒ 운전면허번호로 대체 가능 |
| 결론 및 조치사항 | | 주민번호 삭제 및 다른 고유식별정보로 대체<br>※ 단 보험가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주민번호 처리가능 |

| <사례 10>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시 주민번호 처리 | | |
|---|---|---|
| 검토 | ① 법령근거 유무 | 없음 |
| | ② 불가피성 유무 | 없음<br>⇒ 물품이용 대금청구, 기물파손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해 담보가 필요시, 다른 대체수단(예치금 예치, 신용카드정보 등록 등)으로 목적달성 가능 |
| 결론 및 조치사항 | | 주민번호 삭제 및 다른 고유식별정보로 대체 |

| <사례 11> 기업 등의 사옥 출입증 교부시 주민번호 처리 | | |
|---|---|---|
| 검토 | ① 법령근거 유무 | 없음 |
| | ② 불가피성 유무 | 없음<br>⇒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등으로 대체 가능 |
| 결론 및 조치사항 | | 다른 개인정보 항목으로 대체<br>※ 다만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주민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되돌려 주는 경우는 가능(신분증에 기재된 주민번호 육안 확인은 '주민번호 처리'로 보지 아니함) |

| <사례 12> 표준약관에 따른 주민번호 처리 | | |
|---|---|---|
| 검토 | ① 법령근거 유무 | 없음<br>⇒「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표준약관 권장 등의 규정은 있으나, 주민번호 처리근거는 없음 |
| | ② 불가피성 유무 | 사안별로 불가피성 유무 다름<br>⇒ 법령근거 없는 관행적 주민번호 처리여부 판단 필요 |
| 결론 및 조치사항 | | 필요시 해당 법령에 근거 반영 |

| <사례 13> 소송관계 제반 서류에 주민번호 기재 | | |
|---|---|---|
| 검토 | ① 법령근거 유무 | 없음<br>⇒「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번호 처리 가능하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처리근거 없음 |
| | ② 불가피성 유무 | 있음<br>⇒ 소송의 경우 특정인을 명확히 할 필요 존재 |
| 결론 및 조치사항 | | 서식 등 법령 반영 필요 (소관 중앙행정기관) |

| <사례 14> 콜센터(컨택센터) 상담시 주민번호 처리 | | |
|---|---|---|
| 검토 | ① 법령근거 유무 | 없음 |
| | ② 불가피성 유무 | 없음<br>⇒ 자사 고객 여부 등 단순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 조합으로 대체 가능 |
| 결론 및 조치사항 | | 주민번호 삭제 및 필요시 대체수단 도입<br>※ 다만 금융회사에서 텔레뱅킹 등을 통해 금융업무를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처리 가능 |

| <사례 15>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권리침해신고 접수 | | |
|---|---|---|
| 검토 | ① 법령근거 유무 | 없음<br>⇒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침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시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반박내용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동법 제44조의2) 주민번호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없음 |
| | ② 불가피성 유무 | 없음<br>⇒ 대면신고시 신분증 확인, 비대면 신고시 *i*-PIN 등 대체수단 활용 가능 |
| 결론 및 조치사항 | | 주민번호 삭제 및 필요시 대체수단 도입 |

| <사례 16> 근로자 퇴직후 주민번호 보관 | | |
|---|---|---|
| 검토 | ① 법령근거 유무 | 있음<br>⇒ 근로자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정보는 퇴직 후 3년간 별도 보관(근로기준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 | ② 불가피성 유무 | 있음<br>⇒ 근로자 퇴직 후 재직내역 발급, 근로소득증명 발급, 4대 보험 연계처리 등을 위해 주민번호 처리 필요 |
| 결론 및 조치사항 | | 별도 조치 불필요 (현행 주민번호 처리 유지)<br>※ 단, 근로기준법은 3년간 보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후 경력증명 요청 등은 3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법령개정 검토 필요 |

| <사례 17> 법령 위임을 통한 협회·단체 등의 교육과정 운영 | | |
|---|---|---|
| 검토 | ① 법령근거 유무 | 개별 검토 필요<br>⇒ 법령의 명문규정 또는 교육과정 지원서식 등에 주민번호 기재항목이 없는 경우 법령근거 없음으로 판단 |
| | ② 불가피성 유무 | 없음<br>⇒ 교육이수 증명, 교육경력 발급 등은 다른 개인정보 조합으로 처리 가능 |
| 결론 및 조치사항 | | 주민번호 삭제 및 필요시 대체수단 도입 |

| <사례 18> 고속버스 예약시 주민번호 수집 | | |
|---|---|---|
| 검토 | ① 법령근거 유무 | 없음 |
| | ② 불가피성 유무 | 없음<br>⇒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대체수단 적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서도 신원확인 가능 |
| 결론 및 조치사항 | | 주민번호 삭제 및 필요시 대체수단 도입 |

| <사례 19> 사내 주차증, 차량출입증 발급시 주민번호 수집 | | |
|---|---|---|
| 검토 | ① 법령근거 유무 | 없음 |
| | ② 불가피성 유무 | 없음<br>⇒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다른 개인정보 항목 조합으로 가능 |
| 결론 및 조치사항 | | 주민번호 삭제 및 필요시 대체수단 도입<br>※ 필요시 차량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확인 후 반환하거나 주민번호 항목을 삭제하고 사본 접수 |

## 붙임 4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시범 사례

### 1 개 요

○ 사업기간 : ‘13.7 ~ 11월 (4개월) ※ 한국인터넷진흥원 수행

○ 대상 : 학원 등 중소업종 **고객관리프로그램 공급업체 20개**

○ 내용 : 고객관리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 소요비용 : 1개소 당 **평균 190만원** ※ 인건비 기준(투입인력 2명, 4.5일 소요)

○ 사업결과 :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100% 완료

※ 개선 완료된 사례는 ‘프로그램 내려받기’를 통해 각 회원사에 전파

**<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시범 실시 현황>**

| 번 호 | 회 사 명 | 업종 | 소재지 |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방법 | 비율 |
|---|---|---|---|---|---|
| 1 | ○○○품 | 학원 | 서울 | 주민번호 일괄삭제 | 70% |
| 2 | ○○○소프트 | 미용실 | 경기 | | |
| 3 | ○○○소프트웨어 | 스크린골프 | 경기 | | |
| 4 | (주)코○○○크 | 유통, 배달 | 서울 | | |
| 5 | ○○○소프트㈜ | 렌트카 | 제주 | | |
| 6 | ○○○두 | 복지 | 서울 | | |
| 7 | (주)○○○케이션즈 | 출판 | 서울 | | |
| 8 | 주식회사 ○○○컴퍼니 | 가맹점 관리 | 서울 | | |
| 9 | ○○○ 소프트웨어 | 도서관 | 서울 | | |
| 10 | 디○○○㈜ | 스튜디오 | 부산 | | |
| 11 | ○○○소프트뱅크 | 자동차정비공장 | 부산 | | |
| 12 | (주)토○○○ | 병원 | 서울 | | |
| 13 | ○○○소프트 | 안경 | 서울 | | |
| 14 | ○○○소프트 | 교회 | 서울 | | |
| 15 | ○○○소프트 | PC방 | 서울 | 생년월일로 대체 | 20% |
| 16 | ○○○온 | 보험 | 인천 | | |
| 17 | ○○○탑 | 부동산 중개 | 경기 | | |
| 18 | ○○○소프트 | 스포츠센터 | 서울 | | |
| 19 | ○○○데이터베이스 | 애견숍 | 인천 | 생년월일, 성별로 대체 | 5% |
| 20 | ○○○소프트 | 차량관리 | 제주 | 직원부호로 대체 | 5% |

## 2 개선 사례

<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선에 소요된 기간 및 비용 >

| 구분 | 소요기간 | 투입인력 | 개발비용 |
|---|---|---|---|
| 최소 | 1일 | 1명 | 22만원 |
| 최대* | 25일 | 4명 | 2,000만원 |
| 평균 | 4.5일 | 2명 | 190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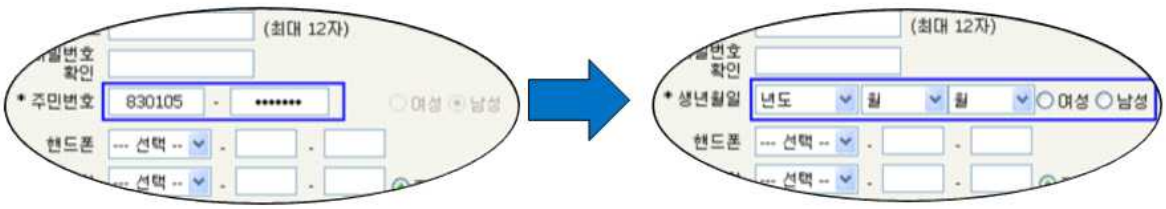
* 주민번호 DB가 연계된 타 시스템까지 함께 개선한 경우임

○ (사례 1) PC방 고객관리프로그램 공급업체, 주민번호→생년월일로 대체

**업체정보** (○○○소프트)

- 업종 : 서울 소재 PC방 고객관리프로그램 공급업체
- 회사규모 : 2,000여개 회원사 보유
- 주민번호 수집 근거 : 없음(관행적으로 수집)
- 개선방법 : 주민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투입인력 2명, 7일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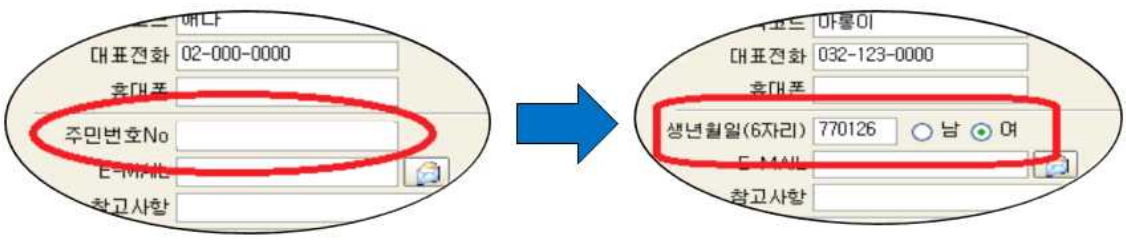



○ (사례 2) 애견숍 고객관리프로그램 공급업체, 주민번호→생년월일, 성별로 대체

**업체정보** (○○○베이스)

- 업종 : 인천 소재 애견숍 고객관리프로그램 공급업체
- 회사규모 : 10,000여개 회원사 보유
- 주민번호 수집근거 : 없음(관행적으로 수집)
- 개선방법 : 주민번호 → 생년월일, 성별로 대체(투입인력 1명, 2.5일 소요)





○ **(사례 3)** 교회 교인 관리프로그램 공급업체, 주민번호 일괄 삭제

**업체정보** (○○소프트)

- 업종 : 서울 소재 교회 교인관리프로그램 공급업체
- 회사규모 : 540여개 회원사 보유
- 주민번호 수집 근거 : 일부 있음(기부금 영수증 발급)
- 개선방법 : 주민번호 일괄 삭제(투입인력 2명, 5일 소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에만 주민번호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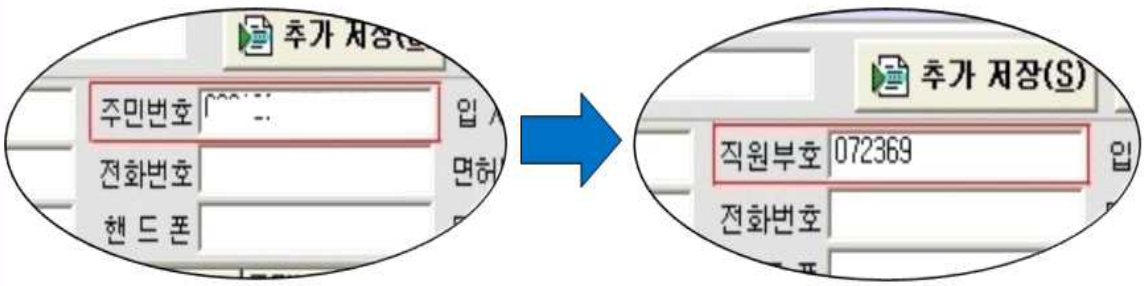



○ **(사례 4)** 차량 관리 프로그램 공급업체, 주민번호→직원부호로 대체

**업체정보** (○소프트)

- 업종 : 제주 소재 차량관리 프로그램 공급업체
- 회사규모 : 100여개 회원사 보유
- 주민번호 수집근거 : 없음(관행적으로 수집)
- 개선 방법 : 주민번호 → 직원부호로 대체(투입인력 1명, 3일 소요)





## 3 개선 방안별 조치사항 예시

### 1. 주민번호 일괄 삭제시

**(1단계) 서비스 분석**

▸ DB 구조와 내부에서 활용 중인 주민번호 이용 범위 분석

※ 주민번호가 색인키(Primary Key)로 이용되지 않고 내부에서 별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주민번호 일괄 삭제 가능

**(2단계) 주민번호 삭제 및 입력창 제거**

▸ 테스트 기간을 설정하고, 회원 DB 상에서 주민번호 일괄 삭제 및 고객관리프로그램(또는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입력창 제거

※ 개인정보 수집/열람/정정 화면, ID/PW 찾기 화면 등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제반 서식 및 업무절차 등 수정

**(3단계) 서비스 변경 확인 및 테스트**

▸ 주민번호 삭제가 완료된 후 적용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 변경 여부, DB 연동 등 각종 기능 이상 유무 등 점검

※ (고려사항) 각종 서비스의 정상 동작 여부, 내부연동 시스템 이상 유무, 기존 DB 백업 및 필요시 복원 가능 여부 등

**(4단계) 변경사항 안내**

▸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기 수집한 주민번호는 파기한다는 내용으로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수정한 후 이용자 안내

※ 서면, 이메일, 문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안내

## 2. 주민번호를 다른 정보로 대체시

**(1단계) 서비스 분석**

▶ DB 구조와 내부에서 활용 중인 주민번호 이용 범위 분석

※ 주민번호가 색인키(Primary Key)로 이용되거나 내부에서 별도로 활용 중인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

**(2단계) 주민번호 대체수단 적용**

▶ 현재 주민번호 이용 범위, 내부연동 시스템 구조 등을 고려하여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색인키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선정

※ 임의 생성정보(회원번호 등), 기존 수집한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조합(전화번호, 성명 등), 기타 다른 정보(*i*-PIN, 공인인증서, 기타 연계정보 등)

▶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각종 업무 절차 수정

※ (예)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 → 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
주민번호 확인 후 ID/PW 찾기 → 이메일 인증, 보안질문 등을 이용하고 ID/PW 등을 일부 마스킹하여 제공

**(3단계) 서비스 변경 확인 및 테스트**

▶ 주민번호 대체가 완료된 후 적용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 변경 여부, DB 연동 등 각종 기능 이상 유무 등 점검

※ (고려사항) 각종 서비스의 정상 동작 여부, 내부연동 시스템 이상 유무, 기존 DB 백업 및 필요시 복원 가능 여부 등

**(4단계) 변경사항 안내**

▶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기 수집한 주민번호는 파기한다는 내용으로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수정한 후 이용자 안내

※ 서면, 이메일, 문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안내

## 붙임 5 주민번호 수집 · 이용 허용 법령 사례

o 아래 법령을 포함하여 기존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법령은 총 866개

- 법률 77개, 시행령 404개, 시행규칙(서식 포함) 385개

| 법률 | 수집주체 (법 적용 대상) | 사유 | 관련 조문 | 비고 |
|---|---|---|---|---|
|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 등 (은행, 보험회사 및 카드회사 등) |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로 실지명의 확인 | <법률><br>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br><br><시행령><br>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br>1. 개인의 경우<br>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 거래자 (대리인 포함) 주민번호 수집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사업자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자) | -거래 기록 및 그와 관련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 보존 | <법률><br>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br>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집 |
| 전자금융 거래법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 업자 | -5만 원 이상의 전자화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실지명의와 연결하여 관리 | <법률><br>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①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화폐발행자"라 한다)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br><시행령><br>제11조(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①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 전자금융 거래 또한 금융실명 거래 의무 적용 |

| 법률 | 수집주체<br>(법 적용 대상) | 사유 | 관련 조문 | 비고 |
|---|---|---|---|---|
| 부가가치세법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일반 사업자)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공급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번호 기재 | <법률><br>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br>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br>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br><br><시행령><br>제53조(세금계산서) 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
| 소득세법 | 원천징수 의무자 |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영수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 <법률><br>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br>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br><br><시행규칙><br>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br>25. 법 제133조제1항·제144조제1항·제144조의4·제145조제2항·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별지 제23호서식(3)·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 | 시행규칙 서식의 원천징수영수증 기재내용에 주민번호 포함 |
| 의료법 | 병원 | -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에 주민번호 포함 | <법률><br>제17조(진단서 등)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법률 | 수집주체<br>(법 적용 대상) | 사유 | 관련 조문 | 비고 |
|---|---|---|---|---|
| | | |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br>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br><br>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br>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
| | | | <시행규칙><br>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br>1.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br><br>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br>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br><br>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어야 한다. 다만,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br>1. 진료기록부<br>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病歷) 및 가족력(家族歷)<br>2. 조산기록부<br>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 |

| 법률 | 수집주체<br>(법 적용 대상) | 사유 | 관련 조문 | 비고 |
|---|---|---|---|---|
|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위 기관의 업무수탁자, 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협회, 보험회사 |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br>1. ~ 16. (생 략)<br>②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br>1. ~ 11. (생 략)<br>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 제176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이 영 제86조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br>④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br>1. ~ 4. (생략)<br>⑤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 자격기본법 | 공인자격 관리자 | -공인자격증 기재사항 및 관리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 가능 | <법률><br>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⑤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br><br><시행규칙><br>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법률 | 수집주체<br>(법 적용 대상) | 사유 | 관련 조문 | 비고 |
|---|---|---|---|---|
| | | |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br><br>제32조(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br>1.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 |
| 고용보험법 |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청구를 위한 지원서 작성시 훈련생의 주민번호 기재 | <법률><br>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원범위, 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br><br><시행규칙><br>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훈련기관에게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주민번호 기재 |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자 → 수사기관 |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 제출 | <법률><br>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br>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
| 전자서명법 | 공인인증기관 | -공인인증서 발급 시 발급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신원확인 | <법률><br>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①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br><br><시행규칙><br>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① 공인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 |

| 법률 | 수집주체<br>(법 적용 대상) | 사유 | 관련 조문 | 비고 |
|---|---|---|---|---|
| | | |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br>1. 개인의 경우<br>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 |
| 방송법 | 방송사업자 | -방송사업자에 대해 정보 공개 요구시 제출자료 | <시행령><br>제65조(정보의 공개) ① 법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합·보도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신청서를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 | -주식교환시 주주의 주민번호 기재사항 | <법률><br>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③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br>5.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br><br>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②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br>4.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 |

# 붙임 6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 관련 Q&A

## Q1 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아야 하나요?

- 주민번호는 본래 행정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특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과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와 불안감이 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및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최소화하여 주민번호 미수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2 '14년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 주민번호는 유일성, 평생불변성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한번 유출시에도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2013년 8월 6일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2014년 8월 7일 전까지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실태를 스스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거나 생년월일, I-pin, 휴대폰번호, 회원번호 등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소관업무의 성격상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정부 부처에 법령 근거 마련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법령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 중인 주민번호를 2016년 8월 6일 이전까지 모두 파기하여야 합니다.
- 현재, 안전행정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주민번호 미수집 관련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 조치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한국인터넷진흥원)>**

◇ 대표 문의처 : 국번 없이 118번

◇ 관련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 문의

☞ 이메일 : jumin@kisa.or.kr

◇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지원 상담 및 컨설팅 문의

☞ 이메일 : privacy_support@kisa.or.kr

### Q3 회사내 직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과 세금 원천징수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자신의 비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소속 직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인사관리나 급여 지급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4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신청자가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나요 ?

- 웹사이트 회원가입 신청자가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 이외에도 휴대전화번호,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등 다양한 본인확인 방법이 있으므로 주민번호를 반드시 수집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따라서,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 방법 보다는 휴대전화번호 등 대체수단을 이용한 본인확인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Q5 멤버십 회원 포인트 부여 및 사용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해도 괜찮은가요?

- 멤버쉽 회원의 포인트 관리를 위해 해당 회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포인트 이용실적 합산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그 목적의 적합성이나 대체수단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허용하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번호 처리가 허용됨)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휴대폰번호, 회원번호, *i*-PIN,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중인 주민번호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2년(2016.8.6일까지) 이내에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 Q6 민간회사 건물 출입시 외부방문자의 주민번호를 기록 보관할 수 있나요 ?

- 민간회사 건물에서 외부 방문자의 성명, 연락처, 방문목적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건물 또는 사무실의 보안 유지나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주민번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까지 수집하여야 할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출입하는 외부 방문자의 출입 목적과 필요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한하여 수집토록 하고,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Q7 콜센터 상담시 고객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가요 ?

- 일반적으로 콜센터 상담시에는 해당 통화 상대방이 고객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과의 거래 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개인정보를 물어볼 수 있으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고 법적 근거 또한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콜센터가 고객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기타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번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다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개인의 경우 성명 및 주민번호)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므로, 금융회사 콜센터가 금융거래를 위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8 채용시험 대상자의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가요 ?

- 주민번호 유출이나 오남용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입사지원 서류 제출이나 채용시험 응시 등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구직자의 경우에는 아직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구직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여야 하는 필요성이나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아직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구직자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이나 휴대폰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향후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급여 원천징수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최종 합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 Q9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는 사용 가능한가요?

- 주민번호 앞자리의 생년월일은 주민번호의 체계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 시 국민이 공공기관에 신고한 날짜를 토대로 정의되는 숫자 열입니다.
- 따라서, 생년월일은 주민번호를 이용한 숫자열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 Q10 주민번호 뒷자리만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수집·이용하여 회원의 유일성과 식별성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번호의 체계를 활용하여 주민번호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령상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 Q11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에 대한 증명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서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대한 증명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으며, 휴대전화번호, 아이핀 등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조항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굳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Q12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번호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어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법률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의 사용이 금지되며 현금영수증 발행업체에서 직접 제공하는 입력창을 통해서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Q13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란 어떠한 경우 인가요?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거래 시 주민번호를 통해 이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 Q14 고객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던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DB 등을 이용해 고객정보를 관리하고 계신다면 해당 DB 테이블을 검토하여 주민번호를 일괄 삭제하거나 주민번호를 다른 정보로 대체한 후 문제가 없다면 주민번호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 별도의 고객관리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리하고 계신다면 먼저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사에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수정사항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15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형태로 된 경우에는 파쇄 등의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복원할 수 없도록 적절한 삭제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Q16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나요?

- 기존의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인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핀을 도입하실 경우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DI(중복가입확인정보), CI(연계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독립적인 고객관리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대신 이름, 전화번호의 조합과 같이 기존에 수집된 다른 정보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Q17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분실한 사용자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 대체수단을 이용해 사용자를 확인하거나, 이용자 본인만 알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Q18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꼭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하나요?**

- 필요한 경우 대체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며, 반드시 대체수단을 도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 이용자의 신원확인이나 중복가입확인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메일을 통해 인증메일을 보내거나 휴대폰을 통해 인증코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사용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9 연령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외에 연령확인, 성인인증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법령상 연령확인, 성인인증 등이 필요하지만 주민번호를 사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이핀을 도입하신 경우, 인증결과로 연령대 정보, 성별 정보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20 주민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본인확인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현재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에는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Q21 아이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아이핀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용자는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 및 저장하지 않으므로 주민번호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Q22 아이핀을 도입하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아이핀은 민간 본인확인기관에서 도입·발급·운영하는 민간 아이핀과 안전행정부의 공공아이핀센터에서 도입·발급·운영하는 공공아이핀으로 구분됩니다.
- 따라서, 사업자는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본인확인기관에 문의하여 아이핀 도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아이핀 : NICE아이핀(1588-2486), SIREN24 (1577-1006)

※ 공공아이핀 : 공공아이핀센터(02-818-3050)

## Q23 공인인증서는 무엇인가요?

-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 금융거래 시 신원확인, 문서의 위·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적 문서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본인확인을 수행할 때,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를 제시하고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Q24 휴대폰 인증은 무엇이며, 어떻게 도입하나요?

- 휴대폰 인증은 이용자가 휴대전화 번호와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휴대폰 인증 서비스 업체에서 발송하는 SMS 인증번호 확인을 통해 인증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 휴대폰 인증의 도입 방법 및 절차는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대폰 인증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 및 해당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